관세청 보도자료

보도시점 2025. 12. 29.(월) 10:00 배포 2025. 12. 29.(월) 08:00

새해부터 적용되는 간이정액환급률표 확정

-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 4개 추가 지정 및 기존 220개 품목 환급률 상향

관세청과 기획재정부는 **간이정액환급률표**를 **개정**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간이정액환급은 **관세 환급 편의**를 위해 중소기업이 제조·수출한 물품에 대해 납부세액, 소요량 등의 복잡한 계산 없이 **간이정액환급률표**에 따라 수출 금액당 일정액을 환급해주는 제도로서, 현재 **7천여 개의 중소기업**이 동 제도를 통해 **연간 약 1천억 원**을 환급받고 있다.

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은 매년 증가*하고 있으며, 내년부터는 **체외진단 검사키트 등 소매용 면역물품, 선반용 공구**를 포함한 **총 4개 품목**이 신규로 지정된다.

* (2022)4,520(+7) → (2023)4,530(+10) → (2024)4,542(+12) → (2025)4,574(+32) → **(2026)4,578(+4)**

아울러, 전년도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, 전년도 환급실적 등을 반영하여 **인스턴트 커피, 김 조제품 등 220개 품목**에 대한 **환급률을 상향 조정**했다.

※ 전년대비 환급률 변동 품목: 729개(**상향 220개**, 하향 509개), 유지 품목: 3,845개

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 및 환급액은 관세법령정보포털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, 정부는 앞으로도 **수출 현장의 목소리**를 **적극 수렴**하여 **관세 환급의 편의**를 높이고, 수출기업을 **지속 지원할 계획**이다.

※ 간이정액환급 대상 품목 및 환급액 조회 방법

① 관세법령정보포털 → 법령·판례 등 → 행정규칙 → '간이정액환급률표' 조회

② 국가법령정보센터 → 행정규칙(훈령·예규·고시) → '간이정액환급률표' 조회

참고. 간이정액환급 신규 지정 품목

담당 부서	관 세 청 세원심사과	책임자	과 장	오현진 (042-481-7870)
		담당자	사무관	신근호 (042-481-7875)
	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	책임자	과 장	권기중 (044-215-4410)
		담당자	사무관	엄세현 (044-215-4412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참고 **신규 지정 품목(4개)**

연번	품목번호	품목명	환급액* * 수출금액(FOB 기준) 1만원 당
1	3002.15-0000	면역물품 (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,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에 한정한다)	30원
2	8207.80-1000	선반용 공구	20원
3	8807.10-0000	프로펠러・로터(rotor)와 이들의 부분품	30원
4	8807.30-2000	헬리콥터의 부분품	30원